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4
----------	-------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직원들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복무 선서문 개정 및 선서의 방법, 절차 규정 (안 제2조, 별표 1, 별표 1의2)
- 나.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민간경력에 따른 연가 일수 2일 가산 규정 마련 (안 제18조의2 신설, 별표 4)
- 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규정 (안 제20조제6항, 별표 5)
- 라.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 산정시 재직기간에 미산입, 연가일수에서 공제, 다음해 연가 미가산 (안 제18조, 안 제21조)
- 마.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신설 또는 일수 조정 (안 제24조, 별표3)
- 바. 모성보호를 위한 유·사산 휴가 확대 및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 (안 제24조제10항)
- 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
-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상 표현 변경 및 용어 순화 (안 전반)

### 3. 개정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계획  
: 총무과-14265 (2010.8.26)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6. 기타사항

가. 관계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0. 9. 2. ~ 9. 22.(제출된 의견 없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로 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선서”를 “복무선서”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중 “주민전체의”를 “주민 전체의”로, “성실로서”를 “성실로써”로, “말은바”를 “말은 바”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공직자 행동률”을 “공직자의 행동률”로 한다.

제4조의2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외”로 하고, 제2항 중 “소속기관의장”를 “소속기관의 장”으로, “기타”를 “,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제2항 중 “기일내에”를 “기일 내에”로 하고, “기타”를 “그 외”로 하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파견 근무하는”을 “파견근무하는”으로 하며, 제2항 중 “파견근무중”을 “파견근무 중”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제3항 중 “연구기관등”을 “연구기관 등”으로,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을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으로 하고, 제2항 중 “겸임 기관”을 “겸임 기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본적”을 “본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휴대 등에”를 “휴대 등에”로 하며, “공무원중 규칙(행정안전부령)”을 “「공무원 중 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장(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연가일수 재직기간 안에서 “이상”과 “미만”은 앞말과 띄어 쓰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로 하고,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을 “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으로, 같은 항 제1호에 “휴직”을 “휴직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로 하고,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정직”을 “정직·강등”으로,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다음해”를 “다음 해”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20조제2항 중 “연2회”를 “연 2회”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를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로, “기타”를 “그 밖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일단위”를 “반일 단위”로, 같은 조 제5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5의 경우에만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를 “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월할”을 “월로 환산하여”로 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을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으로 하고, “소숫점”을 “소수점”으로 하며, “절삭한다.”를 “절사한다.”로 하고,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상외의”를 “부상 외의”로 하며, “누계8시간”를 “누계 8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연60일”를 “연 60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요양중”을 “요양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7

일이상"를 "7일 이상"으로 하고, 제3항 중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호 중 "병역법 기타"를 "「병역법」, 그 밖에"로,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3호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으로, "건강진단"를 "건강검진"으로, 제6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으로, 제7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 하되,"를 "허가하되,"로 하고, "되게하여야"를 "되도록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월1일"를 "매월 1일"로, 제5항 중 "재학증인"을 "재학 증인"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5일이내의"를 "5일 이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임신 16주 이후"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 제1호)중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6주"를 "임신기간이 16주"로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6.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같은 조 제11항 중 "범위내"를 "범위에서"로, 같은 조 제12항 중 "동 조례

제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조제 제9조제2호에 따라”로 하고, “퇴직예정일전”을 “퇴직예정일 전”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9조 본문내용 중 “국외 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을 “휴가기간의 범위에서”로 하고, “공무외의”를 “공무 외의”로 하며, 같은 조를 제25조의2로 한다.

제5장(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선서문 (제2조제1항 관련)

###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제2항 관련)

###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 (제4조제2항 관련)**

대 인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li> <li>○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li> <li>○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li> <li>○ 품위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li> <li>○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li> <li>○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 부담 없도록 처리한다.</li> <li>○ 주민의 존경과 신리를 받도록 처신한다.</li> <li>○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li> <li>○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li> <li>○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을 엄수한다.</li> <li>○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li> <li>○ 근검, 절약한다.</li> <li>○ 남에게 겸손한다.</li> <li>○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li> <li>○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li> <li>○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li> <li>○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li> <li>○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li> </ul>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8조의2 관련)

<p>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p> <p>「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li> <li>-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li> </ul> <p>※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p>
---

[별표 5]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20조제6항 관련)

구분	대 상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회갑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법 제59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지방공무원법</u>」 제59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u> ……</p>
<p>제2조(선서)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 <u>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하는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u></p>	<p>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이 「<u>지방공무원법</u>」(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u>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u></p> <p>② <u>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u>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u></p>	<p>제3조(책임완수) …… <u>주민전체의</u> ……</p> <p>…… <u>성실로써 맡은 바</u> ……</p>
<p>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략)</p> <p>② <u>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u> ……</p>

현행	개정안
<p>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생략)</li> <li>4. <u>기타</u>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ol>	<p>제4조의2(비밀엄수).....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u>그 밖에</u> .....  .....  .....  .....</li> </ol>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u>기타</u>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u>기타</u>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u>소속기관의장</u>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u>기타</u>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u>그 외</u>.....  .....  ..... <u>그 외</u>.....  .....  .....</p> <p>② <u>소속기관의 장</u>.....  ....., <u>그 밖에</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u>기일내</u>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u>지체없이</u>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 ..... ..... <u>해당</u> ..... ..... ..... <u>아니 된다</u>. ② ..... <u>기일 내에</u> ..... ..... <u>그 외</u>..... ..... ③..... ..... <u>지체 없이</u> ..... .....</p>
<p>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 <u>규정에 의하여</u> 다른 기관에서 <u>파견 근무하는</u>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p> <p>② 다른 기관에서 <u>파견근무하는</u> 자가 그 <u>파견근무중</u>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u>당해</u>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파견근무) ① ..... <u>에 따라</u> ..... <u>파견근무하는</u> ..... ..... ..... ②..... ..... <u>파견근무 중</u> ..... ..... ..... <u>해당</u> ..... .....</p>

현행	개정안
<p>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u>을 준용한다.</p> <p>이 경우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p> <p>제10조(겸임근무) ① <u>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u>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 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u>겸임 기관의 장은</u> 당해 겸임근무자의 <u>본적기관의 장에게</u>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  ..... <u>연구기관 등</u>.....  .....  ..... 「<u>재외공무원 복무규정</u>」(대통령령).....  .....  ..... <u>구청장</u>.....  .....  ..... <u>그 밖의</u> .....  .....</p> <p>제10조(겸임근무) ① <u>법 제30조의 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u> .....  .....  .....  .....  .....  .....</p> <p>② .....  .....  ..... <u>겸임기관</u>.....  ..... <u>해당</u> ..... <u>본직</u>...  .....  .....</p>

현행	개정안
<p>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 은 <u>근무중</u>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 대등에 관하여는 <u>공무원증 규칙</u> (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p>	<p>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 <u>근무 중</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휴 대 등에 …… 「<u>공무원증 규 칙</u>」(행정안전부령)…… ……</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근무시간등</u></p> <p>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 의 <u>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 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 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 로 한다.</u></p> <p>② <u>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 까지로 하며, 점 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 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 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③ <u>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u></p>	<p>&lt;삭제&gt; <u>&lt;삭 제&gt;</u></p>

현행	개정안
<p>④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4항에 의거 따로 정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및 연장)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구청장 기타 구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	-----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현행과 같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② .....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 .....  
 ..... 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  
 .....  
 .....

현행	개정안
<p>1.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u>휴직</u></p> <p>2.~ 3. (생략)</p> <p>③ <u>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u></p> <p>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p> <p>2. <u>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u></p> <p><u>&lt;신 설&gt;</u></p> <p>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p> <p>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u>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u></p>	<p>1. .... ..... <u>휴직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u></p> <p>2.~ 3. (현행과 같음)</p> <p>③ <u>해당 ..... 정직 · 강등.....</u>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다음 해.....</u> ..... 1. .... 2. <u>제20조제5항에 따른 ..... .....</u></p> <p><u>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u></p> <p>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연 2회 ...</u> .....</p>

현행	개정안
<p>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u>반일단위로</u>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p> <p>④ (생략)</p> <p>⑤ 공무원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u>당해</u>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u>범위안에서</u>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u>당해</u>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u>범위안에서</u>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u>당해</u>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lt;단서신설&gt;</p>	<p>.....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원 외의 ..... <u>그 밖에</u> .....</p> <p>.....</p> <p>③ ..... <u>반일 단위</u> .....</p> <p>.....</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제18조에 따른 ..... <u>해당</u> .....</p> <p>..... <u>범위에서</u> .....</p> <p>.....</p> <p>⑥ ..... <u>해당</u> .....</p> <p>.....</p> <p>..... <u>범위에서</u> .....</p> <p>..... <u>해당</u> .....</p> <p>.....</p> <p><u>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5의 경우에 한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u>결근일수 ·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u>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p> <p>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u>당해</u>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u>월할</u>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u>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삭한다.</u></p> <p>○ 휴직자의 연가일수 =</p> $\frac{12\text{월}-\text{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p>③ <u>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u></p> <p>④ <u>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u>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u>정직일수 ·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u> ……………</p> <p>② ……………  ……………  ……………  … <u>해당</u> ……………  ……………  <u>월로 환산하여</u> ……………  ……………  ……………  … <u>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u> ……  …………… <u>소수점</u> ……  ……………  …………… <u>절삭한다.</u></p> <p>○ 휴직자의 연가일수 =</p> $\frac{12\text{월}-\text{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p>③ …………… <u>부상 외의</u> ……………  …………… <u>누계 8시간</u>……………</p> <p>④ <u>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u>  ……………  ……………  ……………  ……………</p>

현행	개정안
<p>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할 경우에는 <u>연60일의 범위안에서</u>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u>요양중인 때에는</u>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u>당해</u>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p> <p>② 병가일이 <u>7일이상일</u>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u>제21조제3항의</u>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u>병가일수</u>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22조(병가)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u>연 60일</u>... <u>범위에서</u> ...  .....  .....  ..... <u>요양 중</u>.....  .....</p> <p>1. (현행과 같음)</p> <p>2. ....  <u>해당</u> .....  .....</p> <p>② ..... <u>7일 이상</u>.....  .....</p> <p>③ .....  .....  ..... <u>제21조</u>  <u>제4항에 따라</u> .....  ..... <u>병가</u>  ..... <u>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u>  <u>니한다.</u></p>
<p>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제23조(공가)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  .....</p>

현행	개정안
1. <u>병역법</u>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1. 「 <u>병역법</u> 」, 그 밖에 .....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2. .... <u>그 밖의</u> .....
3. <u>법률의</u>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u>법률에</u> 따라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u>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5. 「 <u>국민건강보험법</u>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
6. <u>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u>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6. 「 <u>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u>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
7. 천재지변, 교통차단, <u>기타의</u>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7. .... <u>그 밖의</u>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u>기타</u>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u>별표3</u>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 ..... <u>그 밖의</u> ..... <u>별표 3</u> .....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u>허가</u> 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u>되게하여야</u> 한다.	② ..... <u>허가하되,</u> ..... <u>되도록 하여야</u> .....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p> <p>2. (생략)</p> <p>3. (생략)</p> <p><u>&lt;신설&gt;</u></p> <p>⑪ 단위사업 또는 현안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의 경우 업무실적에 따라 5일 범위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p>	<p>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p> <p>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p> <p>3. 임신기간이 16주 ..... ..... .....</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6.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p> <p>⑪ ..... ..... ..... <u>범위에서</u> ..... .....</p>



현 행	개 정 안
<p>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 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7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동 조례 제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예 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 를 얻을 수 있다.</p> <p><u>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 와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경 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⑫ ..... ..... ..... ..... ..... ... 같은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 퇴직예정 일 전 ..... ..... .....</p> <p>&lt;삭 제&gt;</p>
<p>제4장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 <u>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 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u></p>	<p>&lt;삭 제&gt; &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p> <p>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p> <p>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p> <p>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p>	<p>&lt;삭 제&gt;</p>
<p>제28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5급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행정기관에 소속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제2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국외 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에는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p>	<p>제25조의2(국외여행) .....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정치운동</p> <p>제30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의 조직·조직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li> <li>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li> <li>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li> </ol> <p>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li> <li>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li> </ol>	<p>&lt;삭 제&gt;</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3. <u>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u></p> <p>4. <u>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u></p>	<p>&lt;삭 제&gt;</p>
<p>별표 1 &lt;선서문&gt;</p> <p style="text-align: center;">선 서</p> <p><u>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u></p> <p>1. <u>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u></p> <p>1. <u>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u></p> <p>1. <u>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u></p> <p>1. <u>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u></p> <p>1. <u>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u></p>	<p>별표 1 &lt;선서문&gt;</p> <p style="text-align: center;">선 서</p> <p><u>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u></p>

현행	개정안
<p>별표1의2 &lt;신설&gt;</p>	<p>별표 1의2 &lt;선서의 절차 및 방법&gt;</p> <p>1. 선서의 시기 및 장소</p> <p>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p> <p>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p> <p>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p> <p>2. 선서의 방식</p> <p>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p> <p>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p> <p>3. 선서 책임자</p> <p>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담당한다.</p>

## 현 행

### 별표 2

#### 공직자의 행동을

대인관계	대내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li> <li>○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li> <li>○ 전과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li> <li>○ 품위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li> <li>○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li> <li>○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 부담없도록 처리한다.</li> <li>○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li> <li>○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li> <li>○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li> <li>○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을 엄수한다.</li> <li>○ 어려운 풍류를 듣는다.</li> <li>○ 근검, 절약한다.</li> <li>○ 남에게 겸손한다.</li> <li>○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li> <li>○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li> <li>○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li> <li>○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li> <li>○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li> </ul>

## 개 정 안

### 별표 2

#### 공직자의 행동을

대인관계	대내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li> <li>○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li> <li>○ 전과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li> <li>○ 품위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li> <li>○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li> <li>○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 부담없도록 처리한다.</li> <li>○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li> <li>○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li> <li>○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li> <li>○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을 엄수한다.</li> <li>○ 어려운 풍류를 듣는다.</li> <li>○ 근검, 절약한다.</li> <li>○ 남에게 겸손한다.</li> <li>○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li> <li>○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li> <li>○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li> <li>○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li> <li>○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li> </ul>

### 별표 3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입 양	본인	14

####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 별표 3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검 토 보 고 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 2010. 10. 21 )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명 금 길 ]**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0월 7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10월 8일

## **4.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 제59조(위임규정)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5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10년 7월 15일자로 「대통령령 제 22275호」로 개정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2010년 7월 22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들의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게 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1) 안 제1조에서는 제목을 복무선서로 개칭하고 별표 1 선서문의 내용도 공무원의 핵심적인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간결하게 하였고 제2항을 신설하여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로 자세히 규정
- (2)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동일하게 규정된 근무시간,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영리업무의 금지, 겸직허가, 정치적 행위 금지 등은 개정 조례에서는 삭제
- (3)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물론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새로이 삽입하여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에 제한규정을 두어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

(4)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에서는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을 위해 별표4를 규정

(5) 안 제20조제6항에서는 공무원이 당해 년도의 잔여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연가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5의 제한단서를 신설

(6) 안 제24조에서는 공무원의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사용을 위한 별표 3의 휴가 일수를 재조정하여 경조사휴가 중 결혼(본인 결혼 : 5일, 자녀 결혼 : 1일), 배우자의 출산(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 휴가일수를 새로 규정하고 본인결혼(7일 → 5일), 배우자 출산(3일 → 5일), 입양휴가(14일 → 20일) 일수 조정

(7) 안 제24조제10항에서는 현행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만 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15주 이내일 경우에도 주도록 완화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1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신설

또한 같은 조 제10항 제6호를 신설하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모성보호를 위한 유·사산 휴가확대,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신설,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 등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균형을 맞추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기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동시에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되었고 입법예고 등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